

2020년 5월 20일
(2021년 3월 19일 갱신)
출입국재류관리청

코로나19로 인해 귀국이 어려워 출국하지 못했거나, 본래 중장기 재류하고 있는 분들의 재류신청 방침에 대해

그동안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분들에 대해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단기체재(90일)> 또는 <특별활동(3개월)>의 재류자격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귀국이 곤란한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서는 <특정활동(6개월)> 비자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별지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3개월 이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 중인 이전 중장기재류자도 앞으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등을 통해 <특정활동(6개월)>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귀국이 어려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주28시간 이내의 자격외 활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 기능실습생이었던 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감리단체 등이 취합해 정리한 후 신청 등 중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주 1) 더불어,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원칙적으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앞으로 오는 우편에 한해 접수합니다.

(주 2) 본 방침에 따라 이미 허가된 <특정활동(6개월)>을 갱신하기 위한 신청은 재류 기한의 대략 1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개월전 이전에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결과는 재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이후에 공지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이 어려운 중장기재류자에 대한 재류자격

(5월 21일 이후 신규방침)

- ① <유학> 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분 혹은 재류하고 있는 분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분)
현행 <단기체재(90일)>
⇒ <특정활동(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허가 · 6개월)>
(※) <유학>의 재류기간내에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있는 분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에도 재허가를 받지 않고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능실습> 혹은 <특정활동 (※)> 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분, 혹은 재류 하고 있는 분(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분)
(※) 인턴십 (9호), 외국인건설취로자 (32호), 외국인조선취로자 (35호), 제조업외국종업원 (42호)
현행 <특정활동(아르바이트 가능 · 3개월)>
⇒ <특정활동(아르바이트 가능 · 6개월)>
- ③ 기타 비자로 재류 중인 분 (상기① 및 ②의 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현행 <단기체재(90일)> (※)
⇒ <특정활동(아르바이트 불가) · 6개월>
(※) 관광객 등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분은 제외합니다.
(주) 일본에서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허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쪽을 참고해 주세요.

(이하의 방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 ①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등 취업비자로 재류중인 분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해고, 계약해지, 자택대기 등에 처한 분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727.pdf>
- ②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거나 내정되어 대기 중인 분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182.pdf>
- ③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재류중인 분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530.pdf>
- ④ EPA간호사 · 간병복지사 후보자 등으로 재류 중인 분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565.pdf>